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해 국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시설로 완충저류시설을 명시화하고, 공동방지사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장의 폐수발생량을 용수사용량 등으로 추정이 가능한 경우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어 적산유량계 부착을 합리화하는 한편, 현실에 맞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업종 분류를 최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현행화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완충저류시설을 국토계획 반영 시설로 명시하여 설치 촉진(안 제21조)

공공폐수·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완충저류시설도 국토계획에 반영토록 규정

나.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이 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업종분류

현행화(안 제72조제4항)

그간 개정된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반영

다. 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성 평가 위탁 근거 마련(안 제81·84조)

- 1)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범위를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의 방법·절차 마련 및 평가결과의 공개로 변경(안 제81조)
- 2)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업무를 국립생태원에 위탁하는 근거 신설(안 제84조)

라. 적산유량계 부착 방법 명확화 및 공동방지사설 유입 사업장의 적산유량계 부착 합리화(안 별표 8)

- 1) 측정기기부착사업장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하수·폐수 적산유량계의 부착 방법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 8)
- 2) 폐수를 공동방지사설에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폐수배출사업장의 폐수량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설치 면제(안 별표 8)

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기준 개선(안 별표 8의2)

경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보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기준 개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완충저류시설

제72조제4항제1호 중 “제조업”을 “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펄프·종이”를 “펄프, 종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화합물”을 “화학 물질”로, “제조업”을 “제조업(의약품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중전의 제8호) 중 “우라늄”을 “천연가스”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5호(중전의 제13호) 중 “도매업”을 “도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만 해당된다)
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8. 1차 금속 제조업
13. 음료 제조업
12. 식료품 제조업
16.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17.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만 해당된다)
1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8.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중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선박유출기름 수거운반업만 해당된다)

제81조제3항제2호 중 “조사”를 “조사의 방법·절차 마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평가 및”을 “평가의 방법·절차 마련 및 평가”로 한다.

제84조제4항 중 “법 제22조의2제1항에”를 “법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9조의3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제22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는 폐수배출량을 적산할 수 있도록 최종방류구의 개수로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량이 적거나 방

지시설의 설치 위치 또는 구조상 개수로에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수로에 부착할 수 있다.

라. 공동방지사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장이 폐수 배출량을 측정하기 어렵고 용수사용량 등으로 폐수배출량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용수사용량 등을 활용한 폐수배출량 추정 및 이에 따른 분담명세 등을 「공동방지사설의 운영 규약」에 규정하여야 한다.

별표 8의2 제2호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기준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추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수질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환경분야, 화공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기계조립 또는 기계설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환경분야(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산업기사는 제외한다), 화공분야, 기계분야(기계조립, 기계설계 산업기사는 제외한다),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원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4항의 개정규정(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반영)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반영)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법 제13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할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 한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21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 ----- ----- ----- ----- -----. 1. ~ 4. (현행과 같음) <u>5. 완충저류시설</u>
제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① ~ ③ (생략) ④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 출시설”이란 「통계법」 제22 조에 따른 표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 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폐수배 출시설을 말한다. 1. 목재 및 나무제품 <u>제조업</u> 2. <u>펄프·종이</u> 및 종이제품 제 조업 3. <u>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u> <u>료 제조업</u>	제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1. ----- <u>제조업(가</u> <u>구는 제외한다)</u> 2. <u>펄프, 종이</u> ----- --- 3. <u>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u> <u>제조업</u>

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신 설>

5. (생 략)

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 제1차 금속산업

<신 설>

8.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9. · 10. (생 략)

11. 음 · 식료품 제조업

12.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신 설>

14.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13.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신 설>

<신 설>

<신 설>

4. 화학 물질 ----- 제조업(의약품은 제외한다)

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만 해당
된다)

6. (현행 제5호와 같음)

<삭 제>

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8. 1차 금속 제조업

9. -----
-- 천연가스 ---

10. · 11. (현행 제9호 및 제10호
와 같음)

<삭 제>

12. 식료품 제조업

13. 음료 제조업

1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
절 공급업

15. 도매 -----
--

16.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17.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폐기물 수집, 운
반, 처리업만 해당된다)

18.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중 기

⑤ (생 략) 제81조(권한의 위임) ①·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2.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수 생태계 현황 <u>조사</u> 3.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수 생태계 건강성 <u>평가 및</u> 결과의 공개 4. ~ 7. (생 략) 제84조(업무의 위탁) ① ~ ③ (생 략)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u>법 제22조의2제1항에</u>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	<u>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선박 유출기름 수거운반업만 해당된다)</u> ⑤ (현행과 같음) 제81조(권한의 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 ----- <u>조사의 방법·절차</u> <u>마련</u> 3. ----- ----- <u>평가의 방법·절차 마련 및 평가</u> ----- ----- 4. ~ 7. (현행과 같음) 제84조(업무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법 제9조의3 제1항에</u> <u>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9</u> <u>조의3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u> <u>건강성 평가 및 제22조의2제1항</u>
--	--

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⑤ (생 략)	----- -----.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6998